

Contents

권두언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동향

회의 및 세미나

공지사항

01

권두언



주인기_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국제회계사연맹 이사

올해로 발생주의 5주년을 맞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국가 재무제표작성에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약 70% 정도가 공공부문의 재무보고서에 발생주의 또는 수정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주의 재무보고서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무통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가 정확한 재무정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하는 것이라면, 발생주의는 실제 물품의 수입과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달에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몇 달 후에 돈을 지불했을 경우, 발생주의는 정확하게 컴퓨터를 구입한 이번 달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채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는 돈을 지불할 때까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다가 몇 달 후 돈을 지불할 때에야 비로소 컴퓨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산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이유로 현금주의 회계기록은 한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계와 같은 작은 규모에서도 현금주의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기업이나 정부 등의 큰 규모에서는 더 많은 차이와 오류가 생겨나므로 발생주의를 통한 정확한 정보의 산출이 요구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회계란, 한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경제활동을 보고하는 것인데, 만약 경제활동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이 아닌, 현금의 지출이나 수입이 있는 시점에 경제활동이 일어난 것처럼 공시한다면 한 회계기간 내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재무정보를 만들고 이를 회사경영에 사용한다면, 한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노력을 쏟는 것입니다.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 회계가 경제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만든다는 것은 최근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발표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최고 50%가 넘는 수준에서 최근 3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칠레에서는 공항건설이나 도로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민관협력프로젝트(PPP)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발생주의 도입의 효과가 크다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IMF의 발표에 따르면, 재무위기를 겪는 기간 중에 국가채무 증가의 23%는 현금주의로 경제활동을 인식한 결과로서, 한 회계기간 내의 부채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의 37%는 경제적인 충격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서 기인한다고도 합니다. 즉, 국가재무보고서에 빠지는 공기업 부채 또는 가치훼손검사(impairment test) 없이 포함되는 부실자산 등이 국가재무정보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가 도입되어 정부결산 부문의 많은 재무정보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예산 규모는 현금주의로 작성되고 있는데, 정부예산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편성, 회계처리 및 감사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재무통계가 발생주의 회계정보로 구성된다면, 정확한 회계정보를 통해 정부회계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현재의 구조로 인해 일시에 모든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정부예산과 결산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로 편성·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회계의 직접적 이용자인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관계자, 또는 회계, 재정부문 전문가들에게 국가의 간략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센터가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정보의 산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제공

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가 재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이고 선심공약에 따른 국가 재무 건전성의 훼손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각종 주요평가지표(KPI)에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사용해야 하고, 주요사업의 목표도 발생주의 회계정보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요의사결정자들의 회계지식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세대에게 발생주의 회계를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생주의 도입을 통한 재무정보의 산출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발생주의 회계지식을 보급·활용하는 데도 노력한다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2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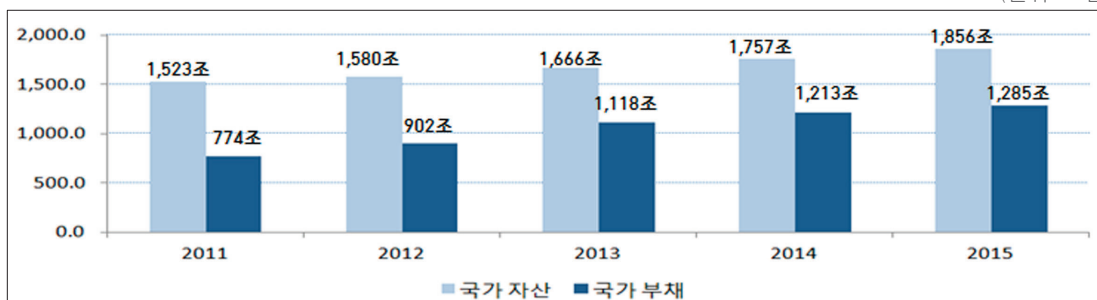
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2016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무결산 결과 2015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유가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6.9조원 증가한 1,856.2조원, 부채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2.5조원 증가한 1,285.2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71.0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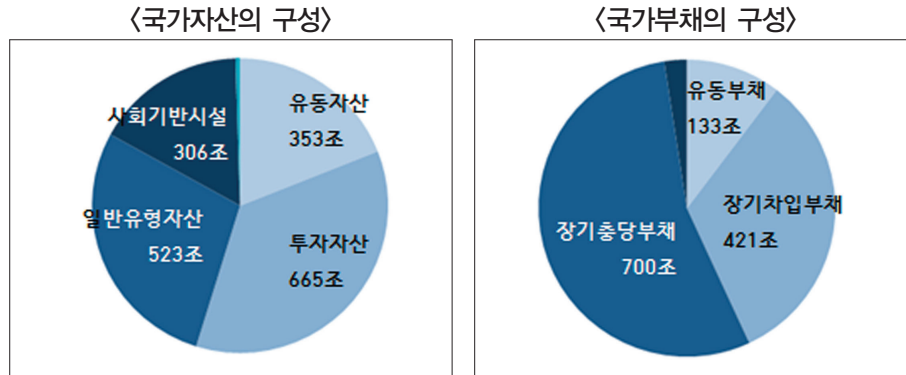
한편,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5조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데 힘입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16~'20년), 연금수령시기 연장(60세 →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 → 60%) 등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1) 국민연금기금 31.5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7.6조원, 주택도시기금 15.8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조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1.3조원 등



2015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856.2조원으로 전년 대비 96.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36.0조원, 투자자산 46.3조원, 일반유형자산 8.7조원, 사회기반시설 6.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5.8%와 28.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0%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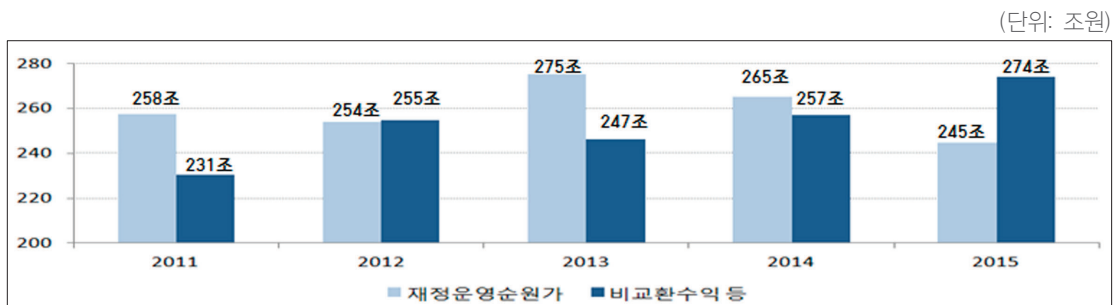
2015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160.7조원, 단기금융상품 52.2조원 등 총 352.6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457.7조원, 장기대여금 127.1조원 등 총 664.8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35.5조원, 건물 58.6조원 등 총 523.3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77.1조원, 철도 33.9조원 등 총 306.4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0조원 등 총 1.2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4.8조원 등 총 7.9조원이다.

2015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28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5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39.1조원, 장기충당부채 17.6조원, 유동부채 13.7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4.5%, 장기차입부채는 32.8%, 유동부채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9.6조원, 단기차입금 54.4조원 등 총 132.8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01.5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5.7조원 등 총 421.0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699.9조원은 연금충당부채 659.9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32.7조원, 기타 7.3조원(보충충당부채 4.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31.5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1.8조원, 장기미지급금 9.7조원이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연금비용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4조원이 감소하여 244.6조원이며, 국세수익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이 274.0조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9.4조원이다.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2 국가회계 해외동향

1)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①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적용례 발표

IPSASB가 ‘IPSAS의 적용례(The Applicability of IPSASs)’와 ‘IPSAS 개정된 서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IPSASs와 권장실무지침(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RPG)에는 국영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 GBE)의 정의와 GBE가 적용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나, GBE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서문에서 IPSAS를 적용하는 공공부문 실체의 특징 제공
- 용어 중 ‘GBEs’을 ‘영리목적 공공부문 회계실체(commercial public sector entities)’로 대체

-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에서 GBE의 정의 삭제
- 개별 IPSAS 및 RPG의 적용범위 섹션에서 GBE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언급한 문단 삭제

이러한 개정사항은 IPSASB가 IPSASs와 RPGs를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공공부문 실체의 유형을 보다 명백히 하며 공공부문 회계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개념체계(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지침의 일관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4/ipsasb-publishes-applicability-ipsass>

② 미국 주·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와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자 포럼’ 공동 개최

IPSASB는 2016년 5월 11일에 코네티컷 주의 노워크(Norwalk)에서 GASB와 공동으로 전 세계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자가 모여 기준 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포럼을 개최했다. 최초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30개 이상 국가의 22개 기구에서 70명이 넘게 참여했다.

포럼을 통해 현재 IPSASB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현안과 관련된 다음의 이슈들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IPSASB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타 공공부문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 수익(Revenues) ○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 유산자산(Heritage assets)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ssets) ○ 공공부문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 리스(L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라이트(lite)’ (중소 규모의 실체가 적용하는 IPSAS) ○ 조세 지출 ○ 천연자원 회계 ○ 연결(통합)(Consolidation) ○ 재무성과 측정 ○ 서비스 성과 보고 ○ 이행 관련 이슈(Implementation issues)

IPSASB는 두 번째 포럼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5/inaugural-forum-public-sector-standard-setters-held-norwalk>

2)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동향

① 연방재무회계기준서(SFFAS) 49 ‘민관협력사업: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 발표

FASAB는 2016년 4월 27일 SFFAS 49 ‘민관협력사업: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SFFAS 49는 보고실체의 일반목적 연방재무보고서에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와의 교환 대가로 받은 상대적 이익/수익
- ② 정부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
- ③ 정부와 관련된 위험(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포함)

이 기준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의 원가 및 관련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sffas_49_nr.pdf

② 연방재무회계기준서(SFFAS) ‘조세지출: 경영진단의견서와 공시 요구사항’의 공개 초안 발행

FASAB는 2016년 6월 2일 SFFAS ‘조세지출: 경영진단의견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다.

조세지출²⁾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지원하는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에 해당된다.

현재 조세지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보고되거나, 순원가보고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부속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s)의 17장(2012년 기준)에 수록하고 있다.

2) 미국의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은 조세지출을 ‘현실의 총소득에 특별비과세, 특별면제, 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세액공제, 특혜적 세율 또는 세부담의 이연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세법 규정 때문에 야기되는 세수 손실’로 정의하고 있음

상정된 연방재무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지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미연방정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연방 수익 중 조세지출의 규모, 목적, 영향 및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상태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FASAB는 2016년 9월 15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taxexpenditures_ed_nr_2016.pdf

3) 미국 주·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동향

① 이해관계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실무적용지침 발표

GASB는 2016년 3월 24일 GASB 기준서(GASB Statement)를 명확히 하기 위한 Q&A를 포함하는 실무적용지침을 발표하였다.

‘실무적용서 No 2016-1(실무적용지침 업데이트-2016)’은 공정가치와 세금 감면 공시에 대하여 최근 발행한 기준서에 대해 제기된 이슈를 주로 다룬다. 또한, 실무적용지침은 기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연금 및 기타 퇴직후급여과 관련하여 최근 발행된 기준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Q&A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003291

② GASB 기준서(GASB Statement) No. 82 ‘연금 이슈’ 발표

GASB는 2016년 4월 11일 주·지방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 회계에 관한 실무 이슈를 다루는 지침을 발행하였다. 이 지침은 주·지방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 관련 기존 지침을 명확하게 하거나 수정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GASB Statement No. 8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필수보충정보 상 급여 관련 측정의 공시
- ② 가정의 선택 및 재무 보고 목적을 위한 ‘보험계리 실무기준’에 따른 편차 처리
- ③ 확정기여형 제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지불한 금액의 분류

이해관계자에 의해 실무 이슈가 제기된 주·지방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 관련 기준서는 다음과 같다.

- ① GASB Statement No. 67 ‘연금 제도를 위한 재무 보고’
- ② GASB Statement No. 68 ‘연금을 위한 회계와 재무 보고’
- ③ GASB Statement No. 73 ‘연금을 위한 회계와 재무 보고 및 GASB Statement 68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자산’

GASB Statement 82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2016년 6월 15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며 개시하는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에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056351

4) 캐나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PSAB) 동향

①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기준 PS 3410 ‘정부이전’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 발표

PSAB는 2016년 4월 20일 PS 3410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PS 3410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지불 권한(Authority to pay)”에 관한 문제 점이 지적되었으며, 적격성 기준 및 정의와 구분은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수익인식 원칙상 수령자는 부채를 발생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정부이전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a) 부정적이고 강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 또는 기한
- (b)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이전된 자원으로 취득 또는 건설된 실물 자본 자산의 사용, 관리 및/또는 유지에 관한 규정; 또는
- (c) 이전된 자원으로 취득 또는 건설된 실물 자본 자산의 사용, 관리 및/또는 유지 요구와 같이 수령자에게 요구되는 규정

지불 권한 (Authority to pay)

대부분의 이전계약은 지불 권한 조항을 포함한다. 정부의 지불 권한만으로 수익과 채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한다.

PSAB는 공식 회계처리지침이 PS3410의 명확한 해석을 도울 수 있을지를 연구할 것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5) 영국 2015 공공부문 통합재정보고서 공표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통합재정보고서(WGA 2015 :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15)를 5월 26일 공표했다. 2015년 3월 31일을 재정상태표일로 하는 해당 재무제표는 영국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6,000여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총자산은 1,455.3백만파운드이고, 총부채는 유동부채 803.1백만파운드와 비유동부채 2,755.4백만파운드를 합한 3,558.5백만파운드로 순자산은 △2,103.2백만파운드였으며, 비유동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 1,493.3백만파운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총손실 152백만파운드에서 기타포괄손실 108백만파운드까지 고려한 총포괄손실은 260.0백만파운드이다.

정부통합 재정상태표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정부통합 수익비용보고서 Consolidated Statement of Comprehensive Expenditure		
	2014-15 (백만파운드)	2013-14 (백만파운드)		2014-15 (백만파운드)	2013-14 (백만파운드)
비유동자산(A)	1,124.4	1,083.4	총수익(A)	△659.3	△652.9
유동자산(B)	330.9	331.5	총비용(B)	733.9	718.4
자산(C=A+B)	1,455.3	1,414.9	금융비용 차감전 손실(C=A+B)	74.6	65.5
유동부채(D)	△803.1	△769.3	금융비용(D)	83.6	79.9
유동순부채(E=B+D)	△472.2	△437.8	금융자산, 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손실(이익)(E)	△4.5	4.6
유동부채 차감 총자산(F=C+D)	652.2	645.6	자산처분손실(이익)(F)	△1.7	△4.3
비유동부채(G)	△2,755.4	△2,486.2	총손실(G=C+D+E+F)	152	145.7
순부채(H=F+G)	△2,103.2	△1,840.6	기타포괄손익(H)	108	64
			총포괄손실(I=G+H)	260	209.7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5617/WEB_whole_of_gov_accounts_2015.pdf

03

재정통계 동향

1 재정통계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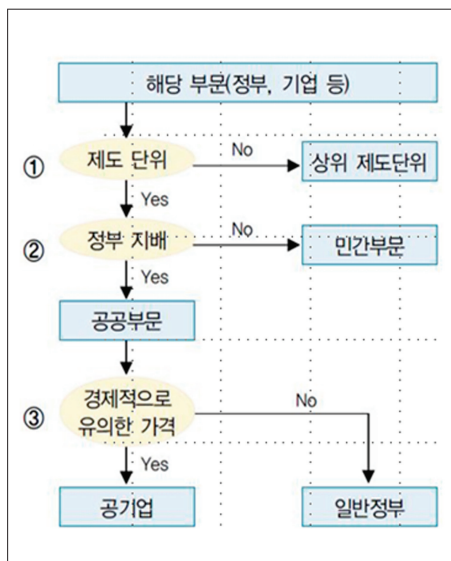
1. 2014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1)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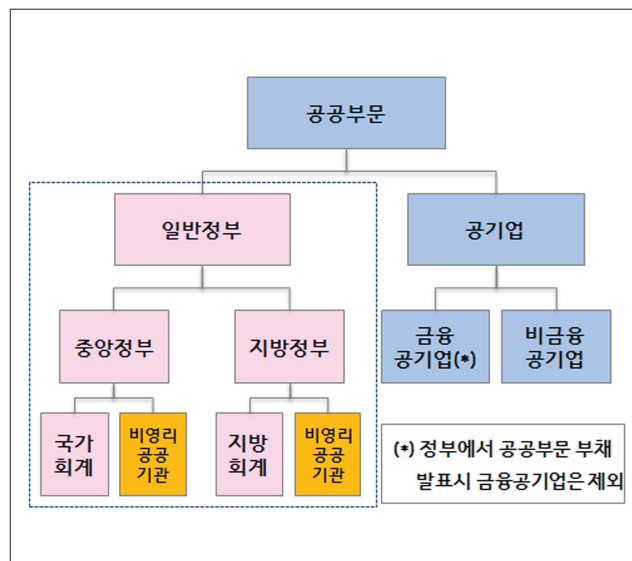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량(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포괄범위

〈공공부문 decision tree〉



〈공공부문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2008 SNA,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서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특수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① 제도단위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② 시장성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 초과할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③ 특수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판매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1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186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54개, 공사 및 공단 91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주요 연차보고서

GF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가.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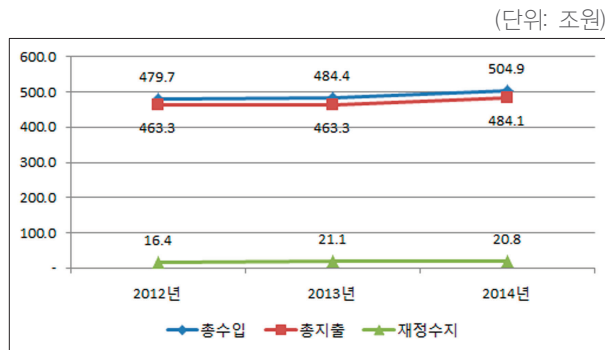
	2012년	2013년(A)	2014년(B)	증감(B-A)	증감률(%)
□ 총수입(A)	479.7	484.4	504.9	20.5	4.2%
○ 조세	258.6	260.2	270.5	10.3	4.0%
○ 사회보험료	90.4	95.7	102.6	6.9	7.2%
○ 출연	0.0	0.0	0.0	0.0	0.0
○ 기타수익	130.6	128.5	131.8	3.3	2.5%
□ 총지출 [(1)+(2)]	463.3	463.3	484.1	20.9	4.5%
(1) 비용(B) ¹⁾	418.8	421.1	442.8	21.8	5.2%
○ 피용자 보수	82.2	86.3	90.4	4.1	4.7%
○ 재화와용역의사용	82.5	86.3	92.2	5.9	6.9%
○ 고정자본소비	21.5	24.0	24.7	0.7	3.1%
○ 이자	21.8	21.6	22.6	1.0	4.8%
○ 보조	67.7	70.6	70.0	(0.6)	(0.8%)
○ 출연	0.5	0.5	0.6	0.1	11.4%
○ 사회급여	79.6	85.6	92.6	7.0	8.2%
○ 기타비용	63.2	46.2	49.7	3.5	7.5%
(2) 비금융자산순취득(C) ¹⁾	44.5	42.2	41.3	(0.9)	(2.1%)
□ 순운영수지(A-B)	60.9	63.3	62.1	(1.3)	(2.0%)
□ 순융자/차입(A-B-C)	16.5	21.2	20.8	(0.4)	(1.7%)

주: 1)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1. ()는 음을 의미함

정부운영표는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입’,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부운영표상 ‘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이익, 환산이익,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손실, 환산손실, 처분손실,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한편,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투자(취득-처분)에서 고정자산소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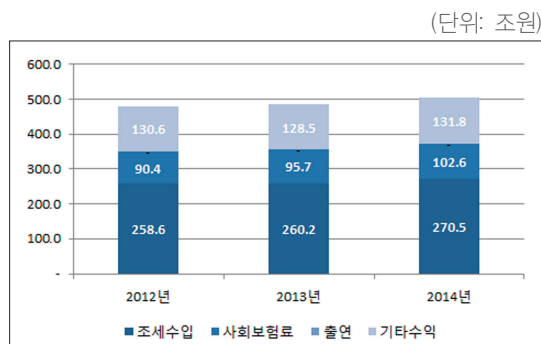
2014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504.9조원(GDP 대비 34.0%)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397.9조원(GDP 대비 26.8%), 지방정부 232.7조원(GDP 대비 15.7%), 내부거래 △125.7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484.1조원(비용 442.8조원 + 비금융자산순취득 41.3조원)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382.3조원(GDP 대비 25.7%), 지방정부 227.5조원(GDP 대비 15.3%), 내부거래 △125.7조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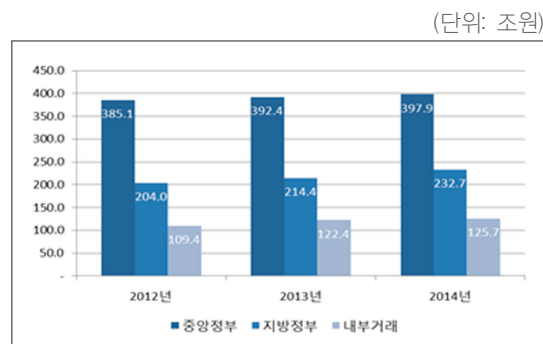
2014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는 20.8조원(GDP 대비 1.4%) 흑자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15.6조원(GDP 대비 1.1%), 지방정부 5.2조원(GDP 대비 0.3%)으로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① 총수입

<총수입 경제적 분류>



<총수입 부문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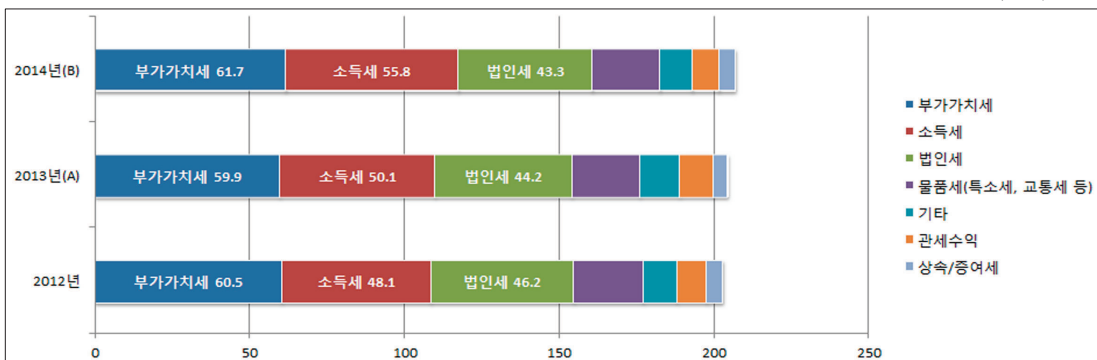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5조원(4.2%) 증가한 504.9조원이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주된 증가 요인이다. 2014년 조세수입은 270.5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조원(4.0%)이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수입은 102.6조원으로 전년 대비 6.9조원(7.2%)이 증가하였다.

(조세수입) 2014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각각 206.9조원 및 63.6조원으로 집계되었고, 부문별 증감을 보면 중앙은 2.4조원(1.2%), 지방에서는 7.9조원(14.3%)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주요 조세항목별 추세를 보면 소득세는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부가가치세는 '13년 소폭 감소 후 '14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수익이 전년 대비 각각 3.2조원, 2.7조원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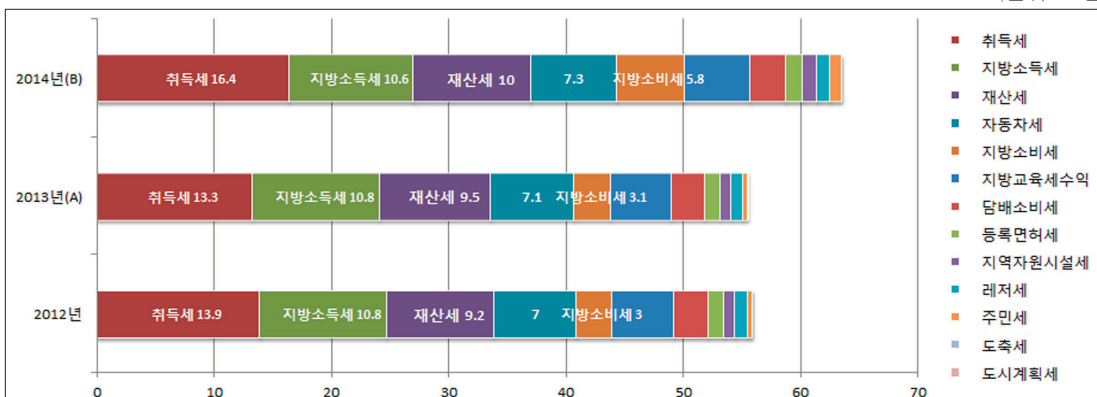
〈중앙정부 조세수입〉

(단위: 조원)



〈지방정부 조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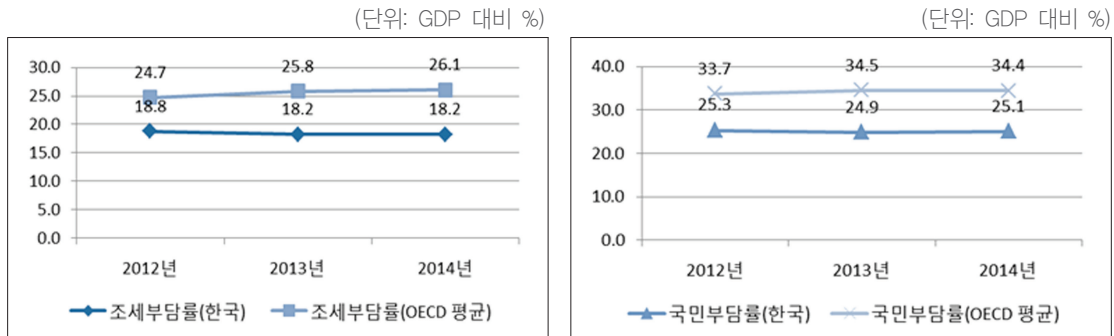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사회보험료수익) 2014년 사회보험료수익은 국가회계·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등) 58.3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4.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부문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 2.2조원, 고용보험 1.0조원, 공무원연금 0.5조원, 산재보험 0.4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조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9조원(7.2%) 증가하였다.

(국제비교) 201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2%로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며, OECD 평균 26.1%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또한, 2014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25.1%로 전년(24.9%) 대비 0.2% 증가했지만, OECD 평균(34.4%)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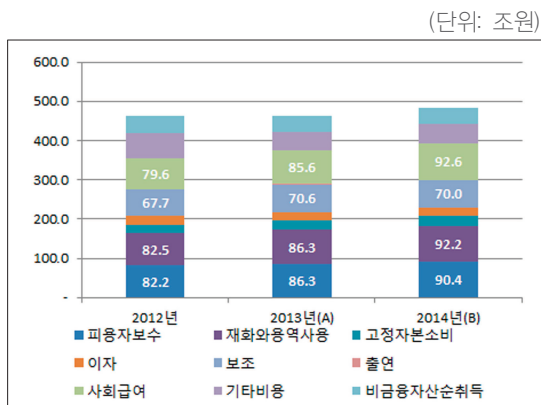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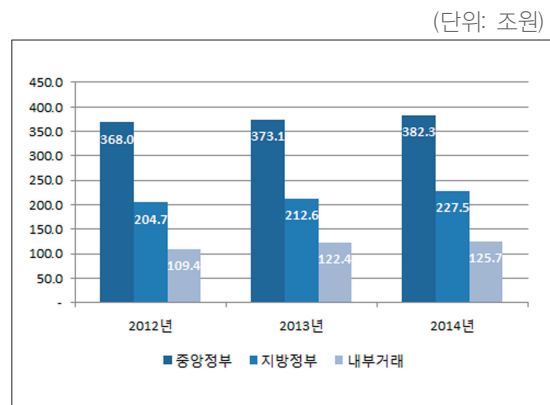
출처: 한국의 경우 '01GFS 기준의 data, OECD는 Revenue Statistics 2015 활용

② 총지출

〈총지출 경제적 분류〉



〈총지출 부문별 분류〉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사회급여 92,6조원(비중 19.1%), 재화와 용역 92.2조원(비중 19.0%), 피용자보수 90.4조원(비중 18.7%), 보조 70.0조원(비중 14.5%), 비금융자산순취득 41.3조원(비중 8.5%)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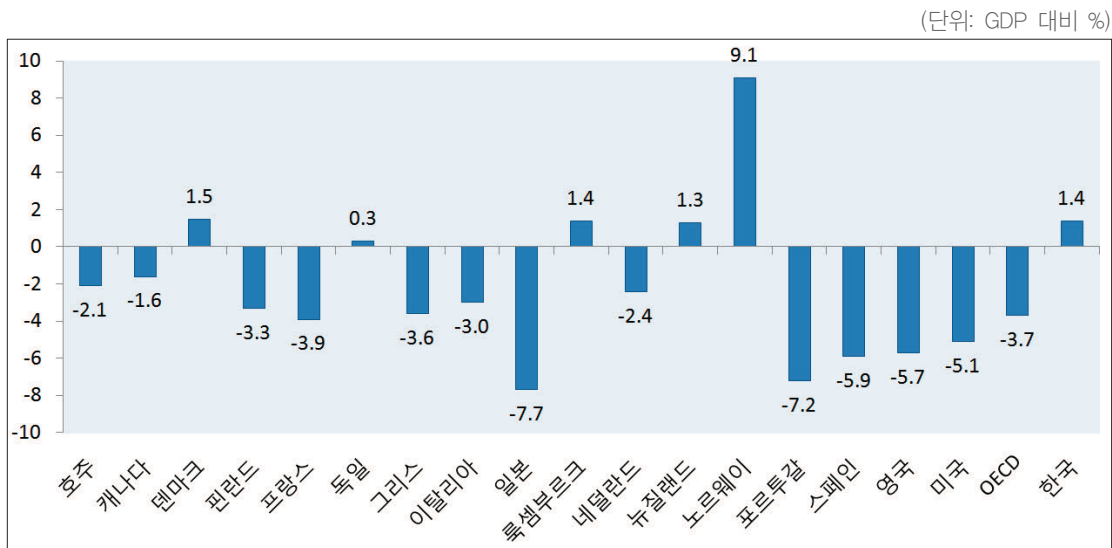
총지출은 전년 대비 총 20.9조원(4.5%) 증가했으며, 주요 계정별 증감을 보면, 재화와 용역 5.9조원(6.9%), 피용자보수 4.1조원(4.1%), 사회급여 7.0조원(7.9%)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③ 재정수지

정부운영에 따른 결과인 재정수지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차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운영수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4년 우리나라의 순운영수지는 62.1조원 흑자(GDP 대비 4.2%)를 기록하여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융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4년 우리나라의 ‘순융자/차입’은 20.8조원 흑자(GDP 대비 1.4%)를 기록하였다. ‘순융자/차입’은 국가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평균 △3.7% 대비 양호한 편이다.

〈OECD 국가별 재정수지〉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98 database('15.11), 한국의 경우 '01GFS 기준의 data

나.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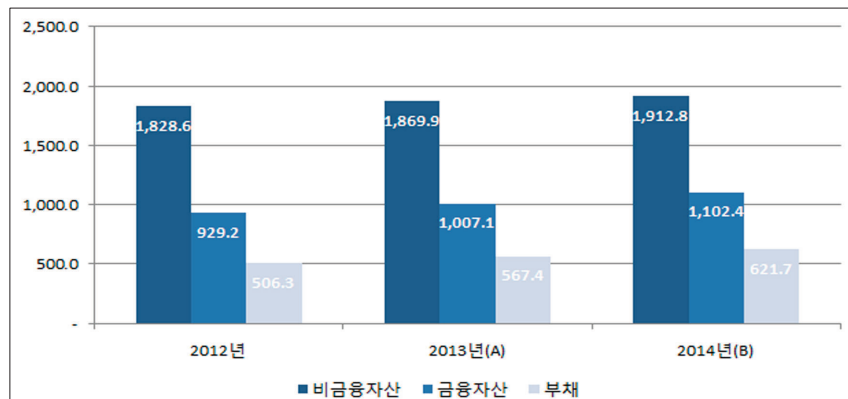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2012년	2013년(A)	2014년(B)	증감(B-A)	증감률(%)
□ 자산	2,757.8	2,877.0	3,015.2	138.2	4.8%
○ 비금융자산	1,828.6	1,869.9	1,912.8	42.9	2.3%
고정자산	1,015.6	1,044.1	1,070.1	26.0	2.5%
재고자산	14.3	14.4	14.6	0.2	1.5%
비생산자산	798.7	811.4	828.1	16.7	2.1%
○ 금융자산	929.2	1,007.1	1,102.4	95.3	9.5%
현금및예금	197.0	196.8	198.4	1.6	0.8%
채무증권	113.1	122.8	143.2	20.4	16.6%
융자	161.1	159.2	161.6	2.4	1.5%
주식및기타지분	355.7	398.5	435.9	37.4	9.4%
파생금융상품	0.8	0.6	2.9	2.3	412.0%
기타미수계정	101.5	129.3	160.5	31.2	24.1%
□ 부채	506.3	567.4	621.7	54.3	9.6%
현금및예금	-	-	-	-	-
채무증권	399.4	449.3	484.8	35.5	7.9%
융자	44.2	56.6	69.7	13.1	23.1%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0.0	9.2%
파생금융상품	1.4	1.4	0.7	(0.7)	(47.1%)
기타미수계정	61.0	59.8	66.1	6.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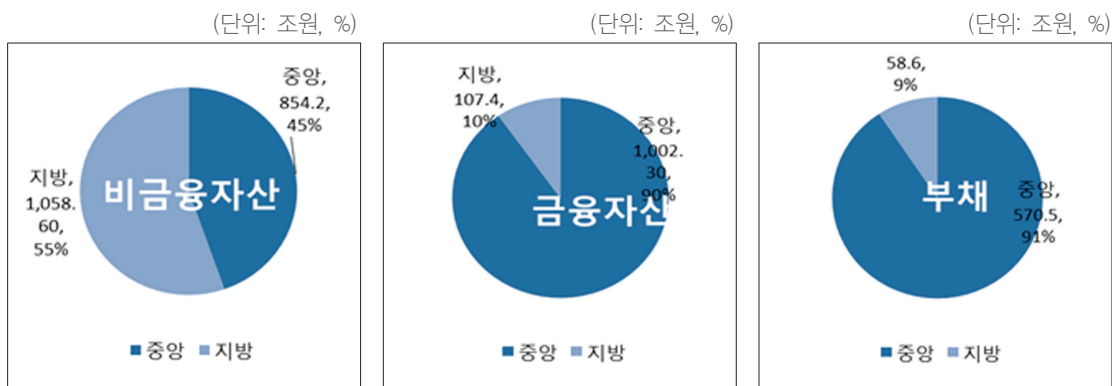
주: ()는 음을 의미함

(단위: 조원)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부채는 전년 대비 54.3조원(9.6%)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95.3조원(9.5%) 및 42.9조원(2.3%)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 대비 금융자산의 증가가 큰 원인은 주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014년 현금주의 재정수지 38.0조원)의 영향이 큰 편이다.

〈부문별 자산/부채〉



① 비금융자산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총 1,912.8조원(GDP 대비 128.8%)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854.2조원(GDP 대비 57.5%), 지방정부 1,058.6조원(GDP 대비 71.3%)으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총 42.9조원 증가했는데, 여기에 고정자본소비 24.7조원을 가산하면 비금융자산에 대한 순투자(취득-처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반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비금융자산에 대략 67.6조원(GDP 대비 4.6%)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 금융자산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총 1,102.4조원(GDP 대비 74.2%)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1,002.3조원(GDP 대비 67.5%), 지방정부 107.4조원(GDP 대비 7.2%)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경우 주식및기타지분(39.5%), 현금및예금(18.0%), 용자(14.7%), 기타미수계정(14.6%), 채무증권(13.0%)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및기타지분 및 채무증권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7.4조원(9.4%) 및 20.4조원(16.6%)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다.

③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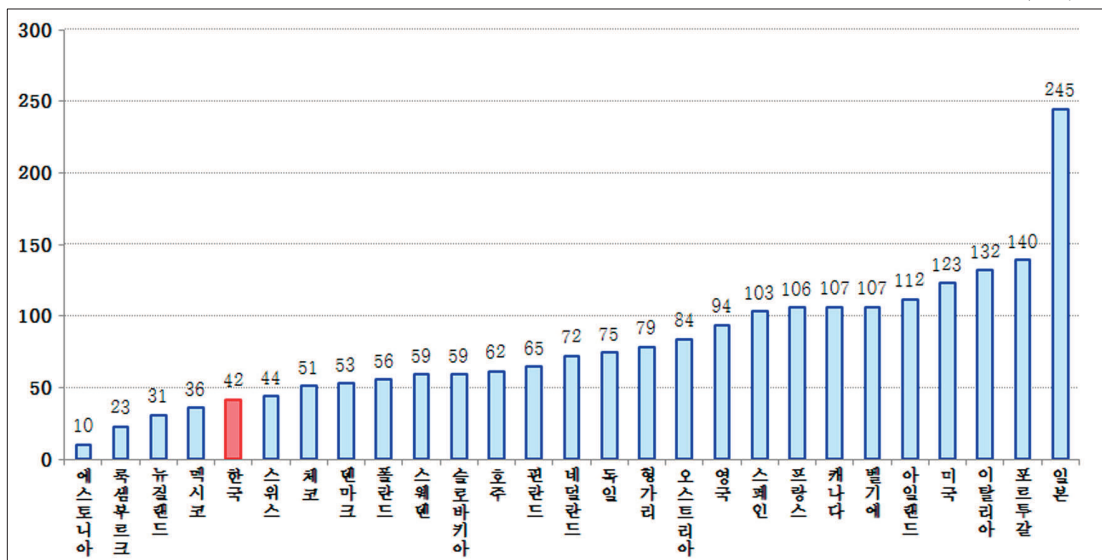
일반정부 부채는 총 621.7조원(GDP 대비 41.9%)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570.5조원(GDP 대비 38.4%), 지방정부 58.6조원(GDP 대비 3.9%)으로 구분되며, 상품유형별로는 채무증권(78.0%), 융자(11.2%), 기타미수계정(10.6%)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부채 중 채무증권 및 융자는 전년 대비 35.5조원(7.9%), 13.1조원(23.1%) 증가했는데, 채무증권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재정수지 적자 등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증가(38.4조)가 주된 요인이다. 융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 8.1조원 증가 및 BTL 관련 미지급금이 1.1조원 증가함에 따른 효과가 크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및 증설시 금융기관 차입금(3.7조원 증가)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융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부채 규모는 621.7조원으로(GDP 대비 41.9%), OECD 평균이 113.8%임을 감안할 때,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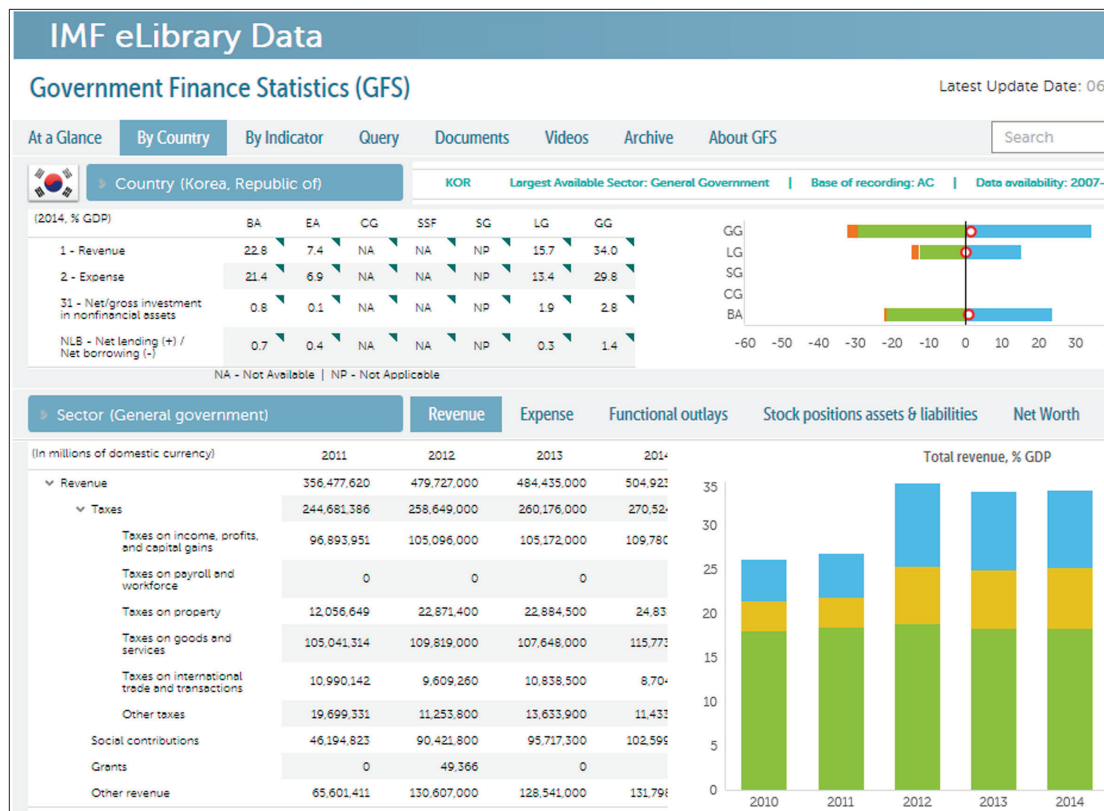
〈일반정부 GDP 대비 총금융부채비율〉

(단위: %)



(4)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정부는 매년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IMF에서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재정통계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data.imf.org/?sk=89418059-d5c0-4330-8c41-dbc2d8f90f46&sid=1435762628665>

2. 공기업 재무분석 결과

(1) 공기업 자산 부채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률 (B-A)/A
자산	유동자산	1,469,110	1,388,102	(81,008)	(5.5%)
	비유동자산	4,123,388	4,144,334	20,945	0.5%
	자산총계	5,592,498	5,532,436	(60,062)	(1.1%)
부채	유동부채	888,918	961,025	72,108	8.1%
	비유동부채	2,882,181	2,688,604	(193,577)	(6.7%)
	부채총계	3,771,098	3,649,629	(121,469)	(3.2%)
자본	납입자본	1,068,585	1,105,036	36,450	3.4%
	이익잉여금(결손금)	520,060	544,582	24,522	4.7%
	신종자본증권	3,082	3,082	-	-
	기타자본구성요소	203,134	207,366	4,232	2.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귀속되는자본	1,794,861	1,860,066	65,205	3.6%
	비지배지분	26,539	22,741	(3,798)	(14.3%)
	자본총계	1,821,400	1,882,807	61,407	3.4%

주: ()는 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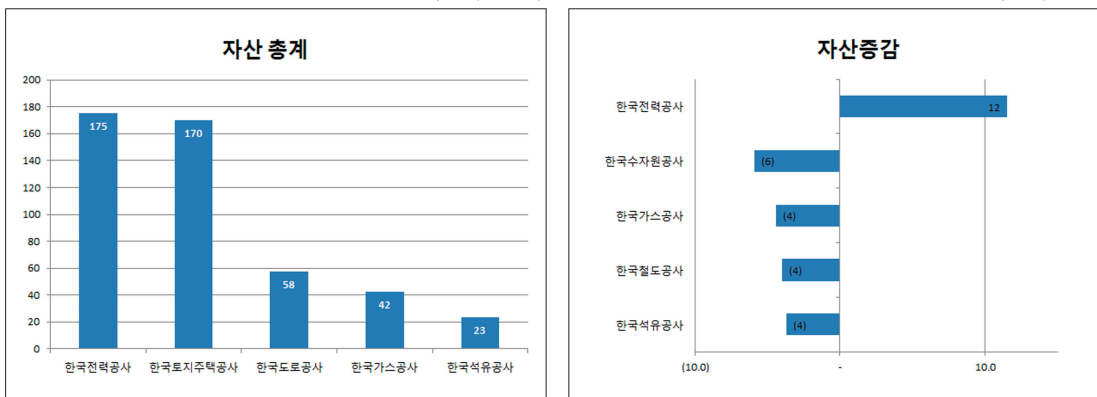
2015년도 24개(한국전력 발전자회사 6개 제외) 공기업의 총자산은 553조 2,436억원, 총부채는 364조 9,629억원, 총자본은 188조 2,807억원으로, 자산 및 부채는 각각 전년 대비 1.1% 및 3.2% 감소하고, 자본은 3.4% 증가하였다.

① 자산

〈2015년 자산규모 및 자산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공기업의 총자산은 553.2조원으로 전년 대비 6.0조원(1.1%) 감소하였고, 이 중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8.1조원 감소한 138.8조원으로 5.5% 감소하였다. 주요 증감 원인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인해 단기금융상품이 증가(5.0조원)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동탄, 하남·미사지구 등 매출증가로 인한 재고자산 감소(4.6조원) 및 철도공사의 자회사(공항철도) 매각에 따른 매각예정자산 감소(4.5조원), 한국가스공사의 매출 감소로 인한 매출채권 규모 축소(2.8조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유동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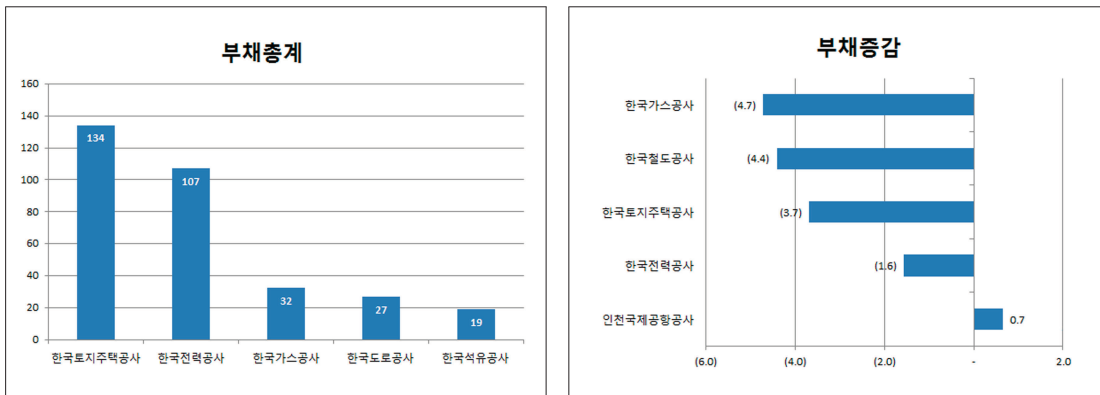
반면, 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41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0.5%)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 3,4호기, 765kV 신고리-북경남 T/L 등 설비투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증가(5.5조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에 따라 임대자산이 증가(4.1조원)한 영향이 크다. 다만, 당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자산손상에 따른 무형자산 감소(6.3조원)가 발생함에 따라 비유동자산의 증가폭은 일부 상쇄되었다.

② 부채

〈2015년 부채규모 및 부채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공기업의 총부채는 365.0조원으로 금융부채의 상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1조원(3.2%)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주요 공기업에서 부채가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감소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유가하락에 따른 운영자금 및 매입채무 감소 등에 따라 부채가 4.7조원 감소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 매각에 따른 부채상환으로 부채가 4.4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이익 증가 및 회수된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차입금 및 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부채가 3.7조원 감소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본사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금융부채 상환에 기인하여 부채가 1.6조원 감소하였다.

③ 자본

공기업의 총자본은 188.3조원으로 전년 대비 6.1조원(3.4%) 증가하였다. 이는 전기 결의한 배당금 지급(0.9조원)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당기순이익(4.6조원)을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 유상증자 및 정부출자를 통한 납입자본 증가(3.6조원)에 기인한다.

(2) 공기업 손익 내역

(단위: 억원, %)

	2014년(A)	2015년(B)	증 감(B-A)	증감률 (B-A)/A
매출액(영업수익)	1,533,929	1,471,322	(62,608)	(4.1%)
(-) 영업비용	1,413,070	1,309,345	(103,726)	(7.3%)
(=) 영업이익	120,859	161,977	41,118	34.0%
(+) 영업외손익	(80,703)	(116,365)	(35,662)	(44.2%)
(=) 당기순이익	40,156	45,612	5,456	13.6%
(+) 기타포괄손익	(6,324)	4,183	10,507	166.1%
(=) 총포괄손익	33,832	49,795	15,963	47.2%

주: ()는 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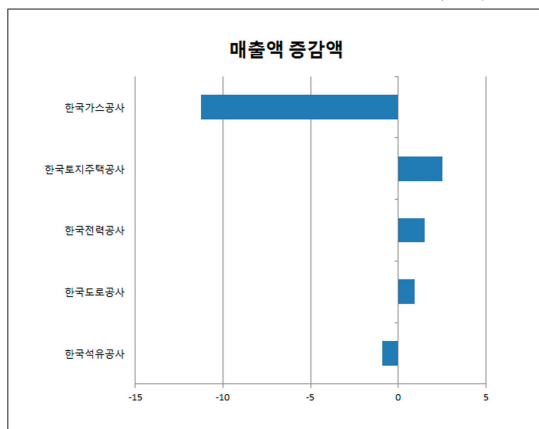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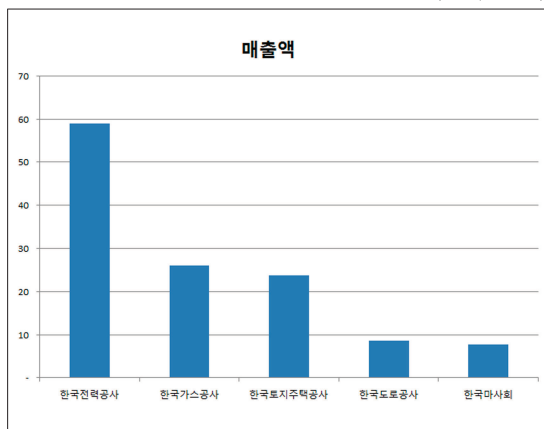
2015년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47조 1,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6조 1,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4조 5,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다.

① 매출액(영업수익)

〈2015년 매출규모 및 매출증감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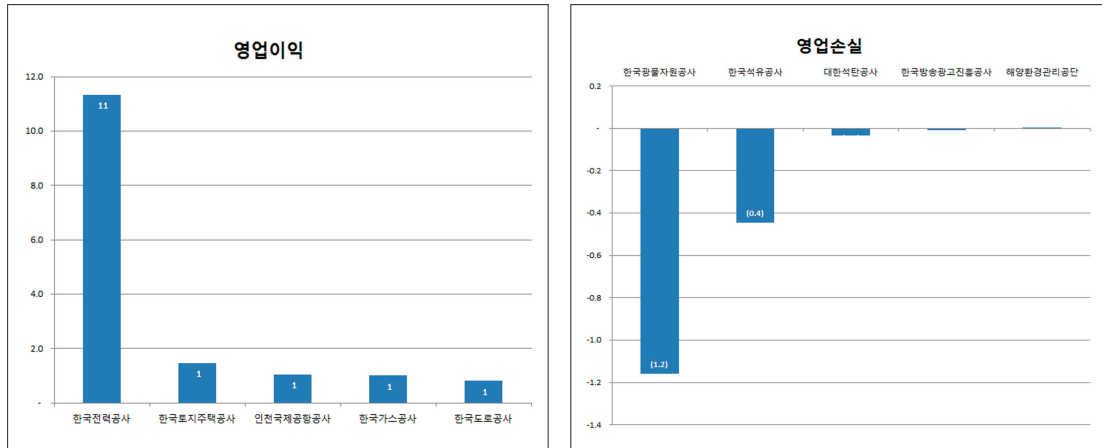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47.1조원으로 전년 대비 6.3조원(4.1%) 감소하였다. 매출액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유가하락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11.2조원)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에, 토지·주택 매출 증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액 증가(2.5조원), 전기판매 및 UAE원전 공사진행률 증가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 증가(1.5조원)로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향은 일부 상쇄되었다.

② 영업이익(손실)

〈2015년 영업이익(손실) 상위 및 하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16조 1,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원(34.0%)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증가(5.6조원)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수익 증가 및 UAE원전 공사진행률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1.5조원)하였으며, 원자력발전 가동률 증가, 연료단가 하락, 구입전력단가 하락 등으로 영업비용이 감소(4.1조원)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5.6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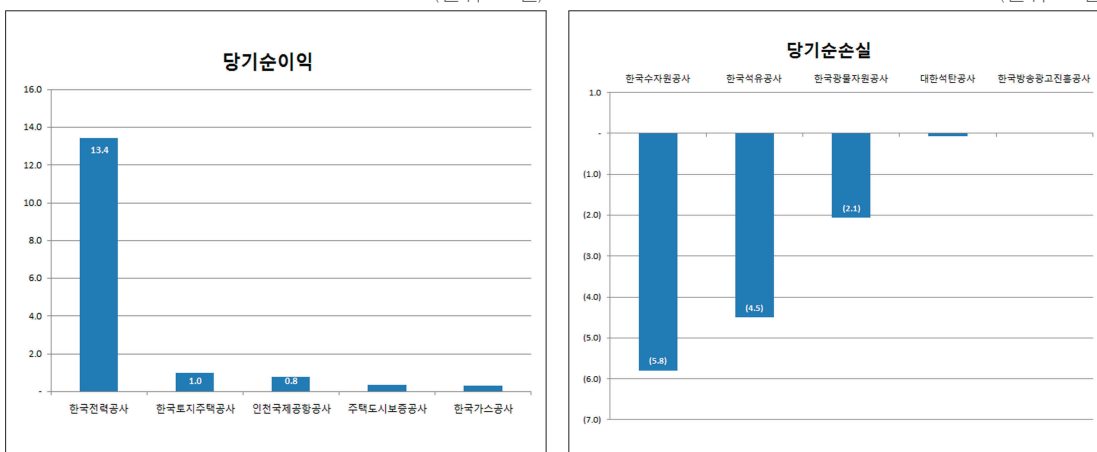
한편,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공기업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장기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및 영업손실로 인한 투자주식 평가손실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0.9조원)하였다.

③ 당기순이익

〈2015년 당기순이익(손실) 상위 및 하위 5개 기관〉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13.6%)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10.6조원 증가와 한국수자원공사 △6.1조원, 한국석유공사 △2.9조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1.8조원 당기순손익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증가(5.6조원)와 더불어 본사 부지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증가(8.5조원), 법인세 비용 증가(△3.8조원)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10.6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지원방안 확정에 따라 당기에 무형자산손상차손을 6.3조원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손익이 전년 대비 6.1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당기 유가 및 광물자원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에너지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유가하락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0.9조원) 및 자산 손상차손 증가(2.4조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2.9조원 증가하였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0.9조원)와 더불어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자산 손상 증가(1.0조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1.8조원 증가하였다.

04

오피니언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박성동_ 기획재정부 국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1. 서설

정부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2011 회계연도부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회의 결산심사를 거쳐 대외적으로 국가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등을 공표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지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이제 도입단계를 넘어 실제 실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기존의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고 국가의 재정관리를 선진화시키는 관리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동안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성과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반에 도입·시행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국가 재정관리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계기가 되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시행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관리

를 통해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자산·부채 등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처별·정책사업별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책사업별 투입 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재정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국가의 활용가능한 모든 국가자산이 결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되어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IMF의 2001 GFS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한 재정통계가 산출됨으로써 재정통계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재정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

국가 재정에서 국가회계의 역할목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전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됨으로써 “국가 재정관리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 관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혁신을 위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가 적절하고 충분히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관리자는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통계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운영에 관한 재정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각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가.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측면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정부부처 간의 협업체계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는 단순한 재무보고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재정부문의 개혁과제로서 재정관리 업무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합의와 국가회계업무의 체계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감사원, 국회, 학계 및 민간 회계전문가 등과도 정책개발 및 관리방안에 있어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치적 지도자 및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재정관리 부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정치적 지도자와 행정관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지도자와 중앙관서의 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국가 재정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지지하고 수용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회계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회계전문가들이 국가회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회계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법령 체계의 지속적 정비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국가 회계기준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회계법령 체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국가회계법령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수용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감사원, 국회, 민간경제주체들까지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재정부문의 혁신을 위한 변화시스템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가자산·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방안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관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앙관서의 정부 업무평가항목에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재무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가회계제도 관련 법령개정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장차관회의에 적극적으로 부의하여 논의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들이 국가회계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계부처 및 학계·연구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혁신의 변화관리자로서 선도적·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한다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높아지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발생주의 재정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국가회계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 2)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적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렬을 신설하여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결산지원단, 회계법인의 자문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업무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5. 결어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 국가회계제도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국가회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 또는 정부결산의 회계기술적 변화 그 이상의 재정부문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시행은 재정부문의 광범위한 개혁과정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관리과정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원 모두가 제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미래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5

센터 동향

1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5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를 지원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한 직후인 지난 2016년 1월부터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약 4개월 동안 중앙관서 재무결산을 지원하였다.



이날 행사는 회계·결산지원단 19명을 포함 총 34명이 참석하였으며, 회계·결산지원단 운영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업무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임동규 과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태오 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회계·결산지원단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였고 간담회 자리를 통한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모완수 회계사는 회계·결산지원단 운영결과와 개선과제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의 업무사례 발표는 디브레인시스템 및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발표자 모두 국가결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함께 디브레인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타 개선의견에 대해서도 2016회계연도 결 산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 공공부문 라운드 테이블 참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4월 8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국제 공공부문 라운드 테이블’을 한 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국제회계사연맹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FAC IPSASB)의 전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버그만(Andreas Bergmann) 박사의 방한을 기해 국내 공공부문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이슈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선재 회계사의 ‘국가회계 도입과 재정통계 산출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드레아스 버그만(Andreas Bergmann) 박사의 ‘건전한 재정관리에 있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각국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부문 및 해외 공공부문 회계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향후에도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이슈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공공부문 회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2016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4.8.), 광화문 나인트리〉

3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 발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4월 21일 ‘지방회계통계센터(2016.2.16 개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김은영 국가회계팀장은 ‘정부회계 전문기관의 역할 및 과제’ 세션에서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관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권선국 교수(경북대),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양영철 수석차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경섭 국장(전 감사원) 등 토론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앞으로도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협력하여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 등 정부회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 (4.21.), 마포 지방재정회관〉

4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18차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를 5월 2일 달개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방안’ 및 ‘센터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좌담회 형식의 종합토론 준비, 준비위원회 구성 확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센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국가회계 홍보를 위하여 한국회계학회에서 주관하는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에 국가회계재정통계 관련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자문위원회 (5.2.), 중구 달개비〉

5 2016년 국고보조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2016년 국고보조금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5월 31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 12월)」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의 후속과제로, 개정된 「보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보조사업운영관리지침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 교재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고보조금 법령, 지침과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6월말부터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 한국회계학회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6~17일 이틀 동안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감사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하였다. ‘국가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와 국가재무보고 개선’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국가회계세션은 회계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국가회계와 재정통계의 산출 정보를 알리고, 이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 독려 및 회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히 학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6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6.16.), 고성 델피노〉

※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본 뉴스레터 「한국회계학회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 결과 참고

7 5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전 홍보를 위하여 5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주인기)를 6월 13일 달개비에서 발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계획과 세미나에서 발표될 연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미나 참석내빈(VIP), 좌담회를 위한 전문가 패널 선정 및 섭외와 5주년 기념행사 사전 홍보를 위한 언론사 기획연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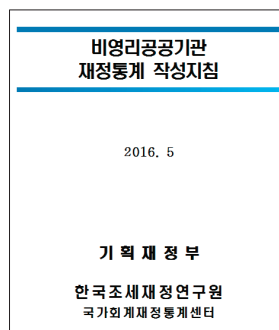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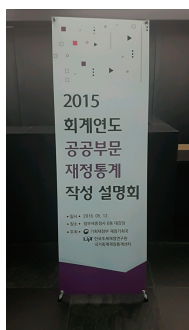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1차 회의 (6.13.), 중구 달개비〉

8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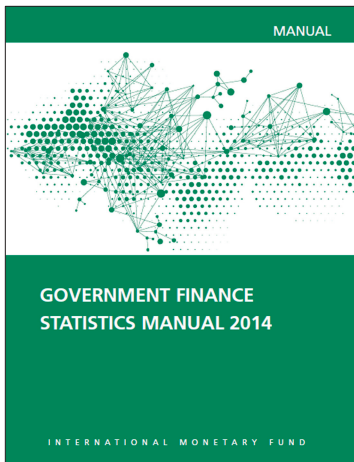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는 2016년 5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인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는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 및 PSDS(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문성유 국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팀장의 재정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재정통계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통계와 합산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로 산출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9 GFSM 2014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 도입방안 연구」를 착수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기존 GFSM 2001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08 SNA 및 PSDS 등 국제통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FSM 2014를 새롭게 마련해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으로 GFSM 2014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GFSM 2014의 국가별 도입현황과 도입계획, GFSM 2014에서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우리나라 재정통계 작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GFSM 2014 도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GFSM 2014 주요 개정사항_예시〉

구 분	GFSM 2014	GFSM 2001
연구개발비 자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R&D)에서 발생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고정자산의 하위계정인 지적재산생산물(intellectual and property products)로 인식하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직원훈련·시장조사·유사활동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은 이들이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편익을 제공할지라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사용으로 처리 (6.24)
군사용무기 자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시스템을 포함한 군사장비를 고정자산으로 인식 전비품의 자산 분류기준이 다른 고정자산의 분류와 동일하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괴적인 무기(예컨대 미사일, 로켓, 폭탄 등)와 관련 차량, 장비, 구조물 등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음 (7.36)
표준화보증 부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보증의 경우 비생명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 - 즉, 표준화보증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부채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을 우발상황의 예시로 규정하고 거래로 인식하지 않으며, 표준화보증 관련 규정이 없음

06

회의 및 세미나

1 「공공부문 Round Table」 결과보고

1. 개요

1. 일시: 2016. 04. 08.(금) 10:00 ~ 13:30
2. 장소: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3F 나인트리컨벤션 Terrace Hall 4
3. 참석자: Prof.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김경호(홍익대 교수),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홍(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 공인회계사회 박영진 국제부회장 외 2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외 4인

〈 주제발표 〉

[발표1] “Accrual Accounting in Korean Public Sector”

- 발표자 : 김선재 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내 용 : 한국 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현황 소개 및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부 재정 통계자료의 산출과 향후 과제

[발표2] “Contribution of accounting to good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 발표자 : Andreas Bergmann, Former Chair IPSASB (2010-15)
- 내 용 : 건전한 정부 재정관리에 있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 진행

2. 주제발표 내용요약

〈발표1〉 한국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 및 도입성과, 향후 과제

- 중앙정부의 회계처리지침 개편, 지방정부의 지방회계법 제정 등 회계제도의 개선사항과 함께 발생주의 방식 GFS의 도입 연혁 및 산정범위
- 자산 완전성 제고 및 연금개혁 촉발 등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와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설명

〈발표2〉 지역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도입 현황, IPSAS 도입의 효과 및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 IPSAS 도입 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중앙정부가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채무전가(debt shifting)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회계와 성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한 재정목표(fiscal target) 설정이 필요하며, 현직 및 차기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3. 자유토론 주요 내용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버그만 교수의 발표자료 중 설문결과를 보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중 ‘회계책임성 제고’ 효과가 ‘자산·부채의 관리’ 효과에 비해 높게 평가된 것이 인상적임
 - ‘자산·부채의 관리’ 항목에 비해 ‘회계책임성’의 경우 측정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선진국들이 이러한 평균치를 높인 것인 아닌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회계책임성’의 경우 측정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설문대상에는 현재 OECD 가입국가 전체와 OECD 가입을 희망하는 지원국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국가로 인해 평균치가 달라진 것은 아님
- 김정호(홍익대 교수)
 - IPSASB 측은 각국의 고유한 정부회계기준과 IPSAS 간의 정합성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그럴 계획은 없음. 다만, 각국 정부회계기준과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버그만 교수의 발표자료 중 4페이지에서 ‘Budgeting’이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 중 어느 것을 의미하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 중 그 어느 한 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스위스와 같이 발생주의 예산인 경우 예산집행 결과인 회계정보와 동일 구조, 동일 항목을 가지므로 예산과 회계의 비교가 용이할 것임
 - 한국의 경우처럼 현금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정과정을 거치면 되므로 예산과 회계의 비교에 발생주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을 각국의 정부회계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회계기준은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이며, GFSM은 통계 작성을 위한 매뉴얼이므로 회계기준을 대체할 수 없음
 - 회계기준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회계정보와 통계와의 차이(gap)를 줄여나가는 것이 GFSM의 역할임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많은 공무원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채무관리 이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효과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다른 도입효과로는 전부원가(full cost) 또는 증분원가(incremental cost)와 같은 원가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원가정보는 성과의 효율성을 알려줄 수 있으므로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함
 - 그 밖에도 자산 손상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보고함으로써 자산의 관리 결과와 함께 수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등 자산관리 측면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매각가능성이 낮고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그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토지를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데, 토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정부 소유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함. 투자 목적으로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토지를 현행가격(current price)으로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매년 평가할 필요는 없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3~5년 주기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정호(홍익대 교수)
 - 한국의 경우에도 5년을 주기로 토지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은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 실제로는 공시지가 등 대체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호주, 영국과 같은 발생주의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인들이 회계보다는 법을 친숙하게 생각함.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개인적으로 스위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회계보다는 예산이나 GFS와 같은 재정이슈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임에도 전체 정치인들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교육 이후에 회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등 교육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자산전가(asset shifting) 또는 채무전가(debt shift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사라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비해 회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음
 - 기존에는 27~28건에 이르던 분리매각(carve-out)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대한 채무전가(debt shifting) 방지 효과를 강조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음. 스위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스위스 중앙정부의 경우 IPSAS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방정부 회계실체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단순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이사)
 -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떠한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네덜란드의 경우 지방정부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한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함

- 박영진(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발표자료 중 GDP 대비 채무 비율 수치는 지방정부의 채무가 포함된 결과인지? 또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산정범위가 일반정부이므로 지방정부의 채무도 포함된 수치이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에 따른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등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함
 -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외부에 대한 채무이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꾸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측면이 있음
 -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임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발생주의 도입효과 중 하나로 회계정보를 성과평가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IPSAS가 이를 위해 예산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성과주의 예산이 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나, IPSAS는 회계기준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정치인 등 의사결정자가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첫째, 핵심성과지표(KPI)를 담고 있는 브로셔 제작이 매우 효과적임
 - 스위스의 경우 재무제표와 정보의 상세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는 브로셔를 제작하였는데, 브로셔 제작 이전에는 재무제표의 다운로드 횟수가 1,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제작 이후에는 1,000,000건 정도로 약 1,000배나 증가하였음
 - 둘째, 차기 의사결정자(next generation)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의사결정자는 법

이나 투표 결과에 따라 계속 교체되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윤정원(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업무팀장)
 - 정부활동이나 정부 재무제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에는 무엇이 있는가?
 -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해외사례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Andreas Bergmann(IPSASB Former Chair)
 - 우선 핵심성과지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핵심성과지표로는 투자액의 자기금융비율(self-financing of investment)이 있음. 지방정부의 경우 이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면 대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핵심성과지표 관련 사례는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음

〈참고〉 Round Table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IPSASB	전 위원장 Former Chair	Prof. Andreas Bergmann
2	국제회계사연맹 IFAC	이사 Board Member	주인기 (Prof. In-Ki Joo)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센터장	정도진 (Prof. Do Jin Jung)
4	한국공인회계사회/CAPA PSFM 위원회	국제부회장/전 위원장	박영진 (Mr. Young-Jin Park)
5	홍익대학교/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교수/심의위원	김경호 (Prof. Kyung Ho Kim)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	교수/자문위원	전중열 (Prof. Jung Yeol Jeon)
7	삼일회계법인/공공부문연구위원회	전문/공공부문연구위원	전 홍 (Mr. Hong Chun)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장	김은영 (Ms. Eunyeong Kim)
11		팀장	박윤진 (Mr. Yoonjin Park)
12		연구원	김선재 (Ms. Sunjae Kim)
13		연구원	임정혁 (Mr. Junghyuk Yim)
14		연구원	한소영 (Ms. Soyoung Han)
15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업무팀장/ 공공부문연구위원	윤정원 (Ms. Anna Yoon)
16		국제업무팀	최유경 (Ms. Claire Choi)

2 FRED(경제개발을 위한 재무개혁) 포럼참석 후기

(재정통계팀 김선재 회계사)

1. 개요

1. 일시 및 장소 : '16.5.17(화) ~ '16.5.18(수) / Kuala Lumpur, Malaysia
2. 참석자 : 공공부문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말레이시아 재무부, 국제회계사연맹, IMF,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참고〉

- CAPA(아태회계사연맹)와 World Bank(세계은행)의 공동기획, FRED(Financial Reform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sia-아시아 경제 개발을 위한 재무 개혁)는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스리랑카에서 열린 FRED I은 재무 보고 체계에서 핵심 참가자들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FRED II 는 주로 공공부문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국가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공 재무관리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FRED II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영국공공부문화계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ing, CIPFA), 및 PwC 말레이시아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FRED II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

1. 공공부문 재무관리 발전
2. IPSAS 도입 관련 주요 이슈
3. 민관공동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3. 여는말

최근 세계적으로 재정수지 악화 및 공공부문 부채의 급격한 부담으로 인해, 재무보고와 재무위험 관리 양 측면에서 공공부문 재무관리 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G20 내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를 재무관리의 단계별로 비교한 결과³⁾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는 재무보고상 상대적 취약점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발전은 시민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줌에 따라,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발생주의를 토대로 한 재무보고는 다기간의 다면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본 틀로 작용합니다. 재무보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과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주의 국가회계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있지만, 국민, 국회, 정책결정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출된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IMF POLICY PAPER, Budget Institutions in G-20 Countries

4. 논의결과 요약

FRED Forum II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 재무관리 발전

전 세계적으로 GDP의 30% 정도가 공공지출임을 감안할 때, 공공재정(Public Finance)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공공부문에 대한 재무 데이터와 재무보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또한 적극적인 공공 재무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Gillian Fawcett*은 강력한 공공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CIPFA) 소속

- 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
- ②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도출 및 회계책임성과 투명성 개선
- ③ 국가적/지역적 계획에 대한 자금의 배분에 영향을 줌
- ④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임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공재무관리 개혁(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이하 'PFM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국들에서는 공공 재무관리가 잘 수행되고 PFM 개혁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간주되지만, CAPA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 재무관리가 열악하며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PFM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8가지 주요 요소(The Eight Key Elements)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① 개혁을 위한 환경 ② 거버넌스-법적 제도적 체계 ③ 거버넌스-가치 체계 ④ 능력과 역량 ⑤ 재정과 정책체계 ⑥ 성과와 관리 ⑦ 보고 ⑧ 조사와 검증

공공부문의 재무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 등으로 공공부문의 재무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공공부문의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재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APA는 특히, Professional Accountancy Organizations(PAOs)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⁴⁾가 유능한 재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이 있으며 PAO는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은 경우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CAPA는 또한 『공공 부문에서 재무 인력의 유치와 유지(Attracting and Retaining Finance Personnel in the Public Sector)』라는 간행물을 통해서 공공부문 회계에서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적 자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4) 시민, 중앙관서, 기부자&대출인, 고위감사기관, 정치인, 학계,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자, 공공부문 재정 인사과 등

공공 재무관리 개혁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며,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국가 및 공공부문 회계의 활용사례 등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IPSAS 도입 관련 주요 이슈

공공부문 재무관리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발전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별로 IPSAS 도입과 관련한 현황에 대한 발표 결과 IPSAS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Indonesi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IGAS)를 제정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요 요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① 탄탄한 이행 및 실행 전략의 개발
- ② 경영진의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헌신
- ③ 기타 법률 및 비즈니스 과정들의 IGAS 이행에 대한 지지
- ④ 채용, 실습, 인재 배양
- ⑤ 통합 재무관리 정보 시스템의 개발

B. 네팔

네팔은 현금주의 IPSAS와 유사한 Nep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NPSAS)를 개발하여 2009년에는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하였습니다. NPSAS 적용에 따라 국제적인 인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부 인식 제고, 정부 관심 유도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지만, ① 재무인력의 부족 ②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부족 ③ 법적 지원의 결핍 등 다수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감사인을 포함한 재무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제도의 재정비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 ADB(Asia Development Bank)

AD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와 IPSAS의 적용이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존의 현금주의 및 수정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기준의 IPSAS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긴 시간 및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서, 국가별로 발생주의 기준의 IPSAS를 바로 도입하기보다 중간 단계로 현금주의 IPSAS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D. 한국

적절하고 투명한 보고체계는 성공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의 발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 및 공무원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과 정책결정자 등 의사결정자가 재무제표를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발생주의 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지지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발생주의 회계의 지속적 발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PSAS와 관련하여 연결(Consolidation)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연결’이란 일련의 단위 또는 기관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재무제표(통계)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결대상 간의 거래, 자산 및 부채의 중복을 상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정부 활동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연결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연결기준으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활동 수준의 두 국가 중 예산외 회계를 사용하는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게 표시됩니다. 즉, 연결을 통해 국가별로 다른 행정제도가 초래하는 차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회계는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과 같이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하고 있으며, 추후 IPSAS에서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면 국가회계에서도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민·관 공동투자

민관공동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란 정부와 한 개 이상의 민간회사 간에 협

력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운영되는 정부용역 및 민간벤처사업입니다. PPP는 우수한 프로젝트 관리 및 위험완화 등 다양한 범위의 이점을 제공하고, 결국 국가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발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다양한 종류의 PPP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 공동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 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질 수 있어서 그 관리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외부채 위험(Off-balance sheets Risk)이 존재하며 국가채무 등에서 관련 부채가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맺는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FRED II Forum의 참관을 통해 공공부문의 아시아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공재무관리 개혁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과제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향후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부문 재무 발전도 기대해 봅니다. 또한, 투명한 보고체계를 위한 IPSAS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국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개최 결과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2016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감사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함

1. 개요

1. 주제 : 국가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와 국가 재무보고 개선
2. 일시 : '16.6.16.(목) 13:30~16:10
3. 장소 :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4. 주최 : 감사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산출정보 /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

- 발표자 : 김은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박윤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주제2]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최연식,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주제3]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배기수, 충북대 경영대학원 교수)

- 공동토론자 : 박성환(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이아영(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한소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주제4]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 개선방안 연구(김주희, 감사연구원 연구관)

- 토론자 : 전중열(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연식(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국가회계 세미나(6.16.),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

2.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산출정보 및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는 김은영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과 박윤진 재정통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에 의하여 산출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사례를 소개하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산출정보 /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 〉

- [김은영] 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표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 발표 5년차임에 불구하고 대중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에서, 국가회계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출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주요 회계이슈와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함
- [박윤진]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및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라 산출되는 재정통계 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IMF 및 OECD 제출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부채와 금융자산 통합관리 등 재정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안함
- [김광윤] 국가회계분야는 회계정보를 통한 연구 등 회계학자가 기여할 바가 많은 분야인 것으로 보임. 회계정보와 예산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재정통계 발표 중 순금융부채의 경우 OECD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음(-)의 수치인 순금융자산이 산출되고 있으므로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 아닌지, 우리나라가 산출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센터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순금융부채가 아닌 순금융자산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선진국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적용한 국제통계기준에는 차이가 없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OECD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순금융부채로 나타남
- [박성환] 연구주제를 많이 제시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회계학이 공적 영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회계 세미나(6.16.),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

두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는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이용자를 명확히 정의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과 취지, 논리적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 개념체계가 작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개념체계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정보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념체계의 제정형식에 대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소영 회계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이아영 교수(강원대학교),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2.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

[최연식]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념체계 도입을 통해 국가회계 법령 제·개정 시 또는 실무 해석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함. 개념체계 도입 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구조화하여야 하며, 재정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과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주석공시와 관련된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개념체계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정보이용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개념체계의 제정형식은 국가회계법에 근거하나,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함

[한소영] 기준을 마련하고 질의회신을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충분한 개념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개념체계 도입 시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① 중앙관서는 작성주체가면서 보고실체이고, 국가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통합재무제표 보고실체임. 개별 회계실체와 국가 입장의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회계처리가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근거기준이 필요함. ②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학회, 연구단체 등에서 개념체계(안)을 작성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이아영] IPSASB(국제공공회계기준) 외에도 SFFAS(미국연방회계기준) 또는 GAS(미국지방정부기준)에서 추가적 정보 활용이 필요함. 미국연방회계기준의 경영자분석보고서를 벤치마킹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보고실체의 장으로 보아 공공회계책임 또는 운영실적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설명하는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지방정부기준의 ‘행정서비스 제공노력과 성과보고’를 도입하여 주된 관심사일 수 있는 정부의 자원 활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박성환] 개념체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보생산자 및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국가재무제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개념체계는 중요함. 국가회계법령 제정 당시에 개념체계를 작성하지 않은 근거와 배경정보 등 확인이 필요하며, 개념체계 도입 시 법령에는 근거규정만 신설하고 개념체계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국가회계 세미나(6.16.),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

세 번째 주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로 배기수 교수(충북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계정보와 재정건전성 분석지표의 관리 수준을 검토·비교하여 향후 국가와 지방의 지표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두 번째 주제 토론자와 동일하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3.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 〉

- [배기수] 중앙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비영리회계라는 관점에서 국가회계와 지방회계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상장폐지 및 도산 예측 등 영리회계에서 발전한 다양한 기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소영]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지표 개발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지자체와 달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회계실체가 없기 때문에 준거기준, 국제 비교, 재정준칙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재정지표 개발이 필요함
- [이아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현재 지자체 재무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고려해야 함. 직영공기업 외 회계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의 현물출자 등의 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는바 이를 유의하여야 함. 또한 정부회계의 목적은 이익창출이 아니므로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활용성이 낮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정책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원가정보가 중요하며, 현재 원가지표의 수준이 성과보고서 수준과 괴리가 있으므로 원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성과와 연결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박성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비교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지자체는 비교할 지자체가 존재하나 국가는 비교회계실체가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분석에 관련된 지표는 서로 비교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회계 세미나(6.16.),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

네 번째 주제는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로 김주희 연구관(감사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재무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해법모색을 시도하였다. 관련규정과 선행연구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서 충실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정보이용자인 국회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국가결산보고서와 국가결산검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 이남주 전문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4.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

[전중열] 재무제표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구조화 노력이 필요함.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아낸다고 해도 프로그램예산제도가 고도화, 구조화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재무분석을 통한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한 방대한 분량의 재무정보가 활용되기가 어려움. 프로그램 단위인 원가정보가 단위사업 또는 세부단위사업으로 세분되어야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최연식] 독립성이 제한되고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국가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 시 MD&A와 Citizen's guide 관계를 참고하여 전문가용과 국민용으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결산보고서에 중복되어 공표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는 ① 기준제정주체와 정보제공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동일하여 재량적 판단 가능성이 있고, ② 국회, 시민단체 등 정보이용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경제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이 약하여 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정보요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공 주체(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국회, 감사원, 학회 등의 회계투명성 관련 연구가 필요함. 또한, 국가비전과 전략에 따른 중장기 추정재무제표, 정책사업 제안 시 미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미치는 정보 제공의 의무화 등도 검토되어야 함

[이남주]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5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발생주의 정보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소책자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또한 현재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의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수정분개를 제시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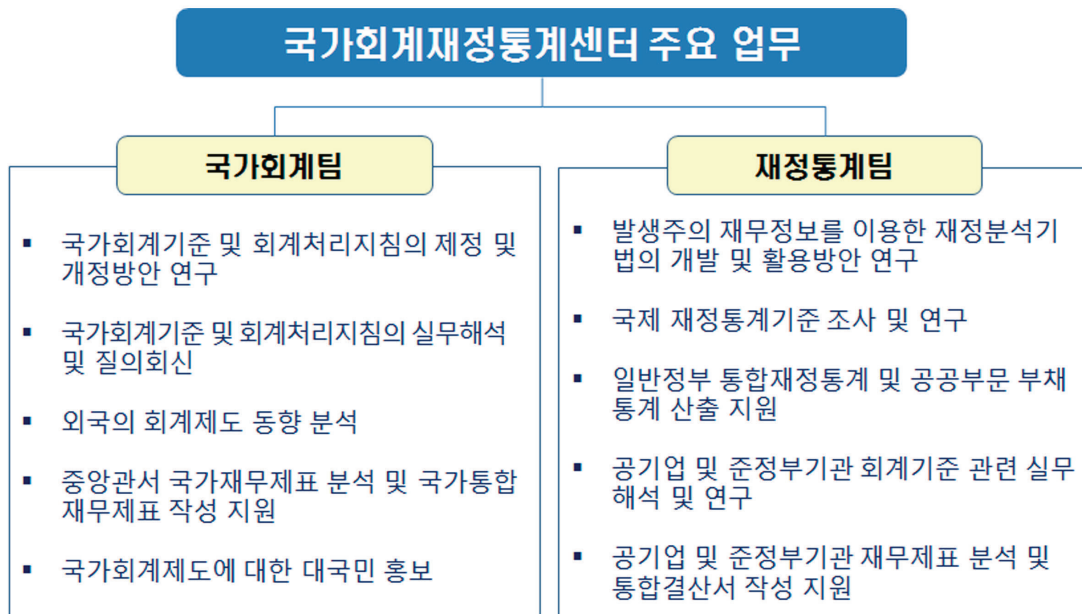


〈 국가회계 세미나(6.16.),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 〉

07 공지사항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6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6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저희 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운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이정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뉴스레터 편집 총괄)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